문서번호	부과과-102985
결재일자	2015.7.1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 무 관	지방소득세2팀장	부 과 과 장	기 획 재 정 국 장
한미향	박두선	박병균	07/17 장기헌
협조	지방소득세1팀장 강문승		

2015년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부과·징수

- 과세기준일 : 2015. 8. 1 현재
- 납세 의무자 : 과세기준일 현재 동작구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
- 납부 기간 : 2015. 8. 16 ~ 8. 31
- 중점 추진 사항 :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과 납세 홍보 강화
- 부과 예상 건수 및 금액 (2014.8월 정기분 기준) (단위 : 건 / 천원)

세 목	부 과 건 수	부 과 금 액
합 계	176,719	1,492,808
개 인 균 등 분	163,703	785,370
사업자균등분	9,874	493,690
법 인 균 등 분	3,142	213,748

※ 2015년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건수 및 금액 미확정

기 획 재 정 국
(부 과 과)

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	비 고
추진근거	■ 법 령 □ 방 침 □ 별도규정 없음 ( )	
사업추진 유형	□ 신규사업 □ 기존사업 □ 일회성사업 □ 계속사업 (년)	
예산확보 사항	□ 신규 확보 필요 ■ 확보 완료 (국 , 시 , 구) □ 비예산 사업	예 산 팀 협 조 ( )
이해관계인 유 무	○ 주 민 : 유 □ ( ) 무 □ ○ 단 체 : 유 □ ( ) 무 □	
타 자 원 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■ ( ) 무 □ ○ 서 울 시 : 유 ■ ( ) 무 □ ○ 민간단체 : 유 □ ( ) 무 □ ○ 기 업 체 : 유 □ ( ) 무 □	
홍 보 필 요 성	○ 홍보대상 : 유 ■ ( ) 무 □ ○ 보도자료 : 유 □ 무 □	홍보물심사 협 조 (■)

2015년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부과·징수

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 및 고지서 송달로 민원을 해소하고, 납세홍보를 통해 납부기한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Ⅰ 과 징 개 요

● **납세의무자**

- 과세기준일 현재 동작구 내에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

● **과세기준일** : 2015. 8. 1 현재

● **납 부 기 간** : 2015. 8. 16 ~ 8. 31

● **세 액** (단 위 : 원)

구 분	주 민 세	지방교육세	합 계	비 고
개 인	4,800	1,200	6,000	
개인사업자	50,000	12,500	62,500	
법 인	50,000 ~ 500,000	12,500 ~ 125,000	62,500 ~ 625,000	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라 5단계로 차등과세

● **2014년 균등분 주민세 과징현황**(2014.14월 기준) (단위: 건 / 천원)

구 분	부 과		징 수		납기내 징수율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
합 계	176,237	1,513,056	151,622	1,339,641	88.5%
개인균등분	163,053	791,197	139,549	675,227	85.3%
개인사업자분	9,813	495,113	9,247	466,036	94.1%
법인균등분	3,371	226,746	2,826	198,378	87.5%

Ⅱ 중점 추진사항

- 과세 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부과의 정확성 기여
- 외국인을 위한 안내문 제작, 지역 언론 등을 통한 납부 홍보 안내
- 지방세 미환급금 사전공제로 납세자 권익강화

Ⅲ 세부 추진사항

1 개인균등분

- **과세대상 :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**
- **과세자료 확인 조사 정비**
  - ○ 관내 대학교에 협조하여 학생명부 파악후 세무종합시스템에 등록
  - ○ 군복무자(단기)는 병무청등과 협의하여 과세자료에서 일괄제외
  - ○ 주민등록표에 의거 전세대 파악 과세기준일 전·출입사항 정리철저
  - ○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정리 및 무단전입자 사실조사
- **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적용철저**
  -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비과세대상확대(지법 제77조)
    (종 전) 기초수급자
    (변 경)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+ 의료급여수급자
    ※세무과-14318호(2015.6.24)
  - ○ 주한외국정부기관 · 주한국제기구 · 외국 민간 원조단체 및 주한외국정부기관 ·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비과세(지법 제77조)
  - ○ 비과세 처리부 작성 비치(시세부과징수규칙 제17조: 별지 제15호 서식)
- **외국인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철저** (행자부 세정과 - 4829, 2004.12.31)
  - ○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지를 둔 외국인 근로자나 산업연수생은 납세의무자에 포함
  - ○ 다만, 직장관계로 회사 기숙사 등을 국내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생활 근거지인 주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

2 개인사업자 균등분

● 과세대상

○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,800만원이상인 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

● 과세자료 확인조사

○ 국세청 과세자료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

※ 7월 중 국세청 자료를 확보하여 신규, 폐업, 전출, 전입사업자 확인

● 기 타

○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 관할 자치구에 통보

○ 과세대상 여부 확인철저

- 총 수입금 등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기준으로 판단
- 경정결정에 의한 총 수입금액 4,800만원 이상된 개인사업자 누락방지

3 법인균등분

● 과세대상

○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

(지점, 지사, 영업소, 분소, 출장소, 직매장, 공사 현장사무소 등 포함)

○ 영리 · 비영리법인, 내국 · 외국법인을 불문 하고 지방세 관계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모든 법인은 과세대상

● 과세자료 확인조사

○ 우리구 과세자료 및 세무종합시스템 자료활용

- 우리구 법인팀의 법인명부 활용
- 법인세분 지방소득세, 재산분 주민세, 특별징수 신고자료 활용
- 취 · 등록세 과세(사무)처리부로 신설 본 · 지점 파악
- 2014년도 주민세 과세자료 활용

○ 우리구 관내 소재 대형 법인이(은행,보험,증권 등)본점인 경우 본 · 지점 및 사무소, 사업소 등을 조사하여 세무종합에 등재

-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법인(예:은행 등)은 ETAX 일괄 전자납부 안내

○ 관내 건설현장 등 우리구 인허가 부서 자료 활용하여 과세 철저

○ 국세청의 법인 자료를 활용 누락법인 수시분과세

○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자본금 및 종업원수 전수조사

○ 세무서 과세자료상의 모든 사업장을 직접 사실확인 조사후 과세

● **기 타**

○ 조사기간내에 소재 확인분은 정기분으로 과세하고 소재 불명분은 추적조사 수시분 과세

○ 법인격 없는 사단, 재단, 기타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대한 과세 철저

○ 과세기준일 직전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이전한 경우 관할 자치구 통보

● **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적용철저**

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(지법 제77조)

○ 사립학교법에따른 학교법인등 과세면제 (지특법 제41조제5항)

- 법인이 경영하는 학교는 감면대상이나 재단은 과세 대상임

○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 사회복지시설사업장 과세면제(지특법제22조제5항)

○ 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(지특법 제50조제6항)

Ⅳ 납세편의 시책

● **차세대 지방세 납부방법에 의한 무고지서 세금납부**

○ 납세자가 카드 및 통장만으로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(CD/ATM)를 통하여

○ 국내 22개 은행 및 14개 국내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가능

● **편의점에서 24시간 납부**

○ 대상 편의점 : CU(구 훼미리마트), GS25, 세븐일레븐, 바이더웨이, 미니스톱

○ 현금카드(우리은행, 신한은행외는 이체수수료 발생)는 전 은행이 가능

○ 신용카드는 우리BC, 삼성, 현대, 롯데, 외환카드만 가능

- **E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 및 대량 일괄납부**
  - ○ 납세자가 ETAX에 접속하여 고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카드, 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
  - ○ 은행, 증권, 보험회사 등 지점별 다량으로 부과한 납세자의 일괄납부 처리 가능
- **전용계좌를 통한 납세자 계좌이체 시행**
  - ○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외환은행, 씨티은행, 농협, 우체국 9개 기관 시행
  - ○ 납세자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
- **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전자고지**
  - ○ 납세자에게 종이 고지서가 아닌 전자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
  - ○ 납부기한 내 납부된 경우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납세자에게 적립
- **각 은행 홈페이지와 ETAX에서 납세자가 자동이체 납부신청**
  - ○ 자동이체 납부 신청기한 : 2015.8.26(24:00기준)
- **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서비스**
  - ○ 앱스토어, 구글play 스토어에서 '서울시세금납부'로 조회·설치 후 납부
  - ○ 계좌이체 : 우리은행만 가능
  - ○ 신용카드 : 국내 14개 모든 카드로 납부 가능
- **ARS(☎1599-3900)를 이용한 납부서비스**
- **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문 발송(영어, 중국어, 일어, 불어)**

Ⅴ 징수율 제고방안

1.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 제고

- **고지서 인쇄 및 송달일정** : 2015. 8. 8 ~ 8. 12
- **고지서 제작 : 주민세 고지서는 봉합식으로 市에서 일괄인쇄후 동서울우편 집중국에서 일괄발송**
- **고지서 송달불능분 처리 : 소재불명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하고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(지방세기본법 제81조)**

2. 납세홍보 및 상담소 설치운영

- **납세홍보 강화**
  - ○ 동작구 7월호 소식지 게재
  - ○ 납부안내 포스터 게시
  - ○ 관내 지정게시해 현수막 게첨
  - ○ 동작구 홈페이지를통한 홍보
  - ○ 구·동 청사 LED전광판, 모니터 등을 통한 홍보
- **납세상담소 설치운영**
  - ○ 설치기간 : 2015. 8. 16 ~ 8. 31
  - ○ 설치장소 : 세무2과 민원실
  - ○ 민원상담 : 납세상담 및 민원편의 제공
- **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송 협조 요청** : 2015.8.24~8.31

Ⅵ 행정사항

- 세부계획수립시행 : 2015. 7. 17(금)
- 과세사항 점검표(체크리스트) 보고 : 2015. 8. 7한
- 2015년 정기분 주민세 과세현황 보고 : 2015. 8. 21한

붙임 1. 주민세(균등분) 소식지 홍보문(안)
2.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홍보문(안)
3. 현수막(안). 끝.